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181

발의연월일: 2024. 9. 23.

발 의 자:이개호·김현정·어기구

이정문 • 박범계 • 박지원

백승아 · 위성곤 · 정진욱

박수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규정을 두어 원자력 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는 자기 자금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 며 발전소 "주변지역"은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로 설정되어 있음.

그러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"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"과 "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"에서는 방사능 재난이 발생했 을 때 효과적인 주민보호조치를 위한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의 설정을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 터에서 30킬로미터로 설정하고 있음.

이에 후쿠시마의 사례에서 보듯이 원전사고는 불시에 발생되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형사고로 발달할 수 있으므로 발전소

주변지역을 현행 5킬로미터에서 30킬로미터로 확대하여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안전관리, 환경개선, 공공·사회복지사업,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2조).

법률 제 호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2조 본문 중 "5킬로미터"를 "30킬로미터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"주변지	제2조(정의)
역"이란 「전기사업법」제2조	
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(이하	
"발전사업자"라 한다)가 가동·	
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	
발전소 {「댐건설・관리 및 주	
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」에	
따른 다목적댐 발전소와 발전	
원(發電源)의 종류별로 대통령	
령으로 정하는 시설용량 이하	
의 발전소는 제외한다. 이하 같	
다}의 발전기가 설치되어 있거	
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	
름 <u>5킬로미터</u> 이내의 육지 및	- <u>30킬로미터</u>
섬지역이 속하는 읍 • 면 • 동의	
지역을 말한다. 다만, 수력발전	
소,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	
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(發電)	
과 관련이 있는 수계(水系)나	
저수지 또는 바다의 인근지역	
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범위의 지역을 말한다.	